

分 析 과 展 望

종법사·수위단회 관련 법규모음

〈第 10 號〉

원기 79년 9월 일

목 차

| | |
|--|-----|
| 1 . 종법사에 관한 불법연구회 규약 및 원불교 교헌상의 규정 조항 모음 | 3면 |
| 2 . 종법사 선거 규정 | 11면 |
| 3 . 수위단회에 관한 불법연구회 규약 및 원불교 교헌상의 규정 조항 모음 | 15면 |
| 4 . 수위단회 규정 | 23면 |
| 5 . 수위단원 선거 규정 | 49면 |
| 6 . 수위단회사무처 규정 | 57면 |

1. 종법사에 관한 불법연구회 규약 및 원불교 교헌상의 규정 조항 모음

(1) 불법연구회 규약 최초 제정 (원기 9년 4월)

제 6조 본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置함

1. 총재 1인
2. 회장 1인
3. 부장 7인
4. 평의원 약간인
5. 간사 약간인

제 7조 총재는 불법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하여 본회를 지도 감독 하기로 함

(2) 불법연구회 규약 1차 개정 (원기 19년 3월)

제 7조 본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置함

1. 종법사 1인
2. 회장 1인
3. 원장 2인
4. 부장 10인
5. 순교무 약간인
6. 교무 약간인
7. 순교 약간인
8. 간사 약간인
9. 총대 약간인

제 8조 종법사는 道理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하며 일반회원이 尊位를 올릴만한 인물로 총대회에서 선정하여 본회 공부 사업 양방면을 지도 감독함

(3) 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원기 27년 4월)

제 3 장 기 관

제 1절 종 법 사

제 21조 종법사는 법강항파위 이상의 정수위단원을 피선거인으로 본지부 연합 회의에서 선정하여 此에 취임함

제 22조 종법사의 임기는 6개년으로 함

단, 제1대 종법사는 하시든지 그 임무를 감능할 자격자가 유한시 교체함

제 23조 종법사는 본회를 통리하고 此를 대표함

제 24조 종법사가 결위될시는 회무총장이 종법사의 代務를 행함

제 25조 종법사는 총대회를 소집하고 그 개회 폐회 정회급 해산을 명함

제 26조 종법사는 본지부 연합회급 수위단회를 소집하고 차를 주재함

제 27조 종법사는 총대회의 협찬을 경하여 회규를 제정 또는 변경함

제 28조 종법사는 본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會令訓示及 命令을 발하고 또는 발케함

단, 회령으로써 회규를 변경함을 부득함

- 제 29조 종법사는 긴급한 사건이 유하여 총대회를 소집키 불능할시는 원의에
자문하여 회규에 대할 회령을 발함
단, 차회령은 차기총대회에서 제출함을 요함
만약 총대회의 승인을 부득한시는 종법사는 장래에 그 효력상실함을
고시함
- 제 30조 종법사는 직원의 임면급 기타의 진퇴를 행함
- 제 31조 종법사는 지부 출장소의 種格을 정하고 또는 차를 승강함
- 제 32조 종법사는 회원에게 포교급 교육을 행하고 그 범계의 승급을 행함
- 제 33조 종법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보상을 행함
- 제 34조 종법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징계급 그 면제 또는 경감케 함

(4) 원불교 교헌 제정 (원기 33년 4월 26일)

제 6장 종법사

- 제 28조 종법사는 본교를 대표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 제 29조 종법사는 원정사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
으로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단, 원정사이상 자격이 없을때에는 정사 중에서 추대 할 수도 있다.
- 제 30조 종법사의 직위기간은 6개년을 1기로 한다.
단, 수위단회의 의결로써 중앙교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31조 종법사가 궐위된때에는 10일이내에 수위단회의 추대를 얻어 1개년이
내에 중앙교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한다.
단, 補任기간은 前종법사의 임기 한한다.
- 제 32조 종법사는 退位後라도 前職位에 준한 예우를 보장한다.
- 제 33조 종법사는 교서를 편정하고 교화를 주재한다.
- 제 34조 종법사는 교정을 총람하고 상벌을 시행한다.
- 제 35조 종법사는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중앙교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시
행한다.
- 제 36조 종법사는 교헌과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교령으로써 교헌과 교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5) 원불교 교헌 1차 개정 (원기 44년 4월)

제 1절 종법사

- 제 16조 종법사는 본회를 대표하며 교단을 총통한다.
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 17조 종법사는 출가위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하고 교정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
- 제 18조 종법사의 직위기간은 6년을 1기로 한다.
- 제 19조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 하여야 한다.
- 제 20조 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1개월이내에 소정절차에 의하여 추대하여야 한다.
단, 보궐임기는 前종법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21조 종법사는 교서를 편정하고 교화를 주재한다.
- 제 22조 종법사는 賞詞를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여 사면복권을 명한다.
- 제 23조 종법사는 법의 절차에 의하여 인사를 임면한다.
- 제 24조 종법사는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케 한다.
- 제 25조 종법사는 교헌·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 제 26조 종법사는 퇴위후라도 전직위에 준한 예우를 보장한다.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6) 원불교 교헌 2차 개정 (원기 49년 4월)

- 제 1 절 종 법 사**
- 제 16조(종법사) 종법사는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 17조(선거와 추대) 종법사는 출가위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
선출된 종법사는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 제 18조(임기) 종법사의 직위기간은 6년을 1기로 한다.
- 제 19조(선거시기)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 하여야 한다.
- 제 20조(보궐) 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교헌이 절차에 따라 추대하여야 한다.

보궐임기는 前종법사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 21조(교화·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 22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 복권을 명한다.

제 23조(인사) 종법사는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 24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한다.

제 25조(교령) 종법사는 교헌,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 26조(자문) 종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약간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7조(상사예우)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 28조(법무실)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써 정한다.

(7) 원불교 교헌 3차 개정 (원기 62년 3월)

제 1 절 종 법 사

제 27조(종법사) ① 종법사는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28조(선거와 추대) ① 종법사는 출가위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하여 수위단원과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한다.

② 전향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

③ 선출된 종법사는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제 29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30조(선거시기) ①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 후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 31조(보궐) ① 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교헌이 절차에 따라 추대하여야 한다.

② 보궐임기는 前종법사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 32조(교화·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

서를 편정한다.

제 33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한다.

제 34조(인사) 종법사는 법의 정한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 35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 36조(교령) ① 종법사는 교헌,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② 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 37조(자문) 종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8조(상사) ①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②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 39조(법무실) ①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②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8) 원불교 교헌 4차 개정 (원기 72년 11월)

제 1 절 종법사

제 29조(지위) 종법사는 교단의 主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 30조(권한대행) 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원로수위단의 중앙단원중 최고법남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31조(피선자격) ① 종법사는 원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② 전향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정사종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 32조(선거) ① 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②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후 늦어도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③ 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시 그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하지 아니 한다.

제 33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시 선출된 종법사는 당선과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 35조(교화·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 36조(교규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 37조(인사) 종법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 38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영전을 수여하고 사면과 복

권을 명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한다.

제 39조(자문) 종법사는 원로 수위단원을 역임한이와 이와 동등한 자격인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 40조(상사) ①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②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 41조(법무실) ①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②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2. 종법사선거 규정

(1) 종법사선거법 49. 10. 16 (교규 제 12호)

제1조(목적) 본법은 교헌의 정한바에 따라 종법사의 선거 또는 인준을 질서있고 공명하게 행함을 목적한다.

제2조(선거사무) 종법사 선거 사무는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3조(선거일 공고) 종법사 선거는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4조(선거) 종법사 선거는 수위단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선거한다.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의에서 선거를 행할 수 있다.

제5조(투표용지교부) 의장은 정규의 투표용지에 검인을 찍어 교부한다.

제6조(투표) 투표는 각자의 의석에서 기표하여 행한다.

제7조(개표) 개표는 본회의에서 선정한 남녀 각1인의 단원과 의장이 행한다.

제8조(선거결과발표) 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결과를 발표한다.

단, 비밀회의에 의하여 선거한 경우에는 당선인만 발표한다.

제9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것
2. 기표란외에 기표한 것
3. 1인이상 기표한 것
4. 기표외의 문자 또는 물형을 그린 것

제10조(인준확정) 종법사는 교헌의 정한바에 따라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음으로써 당선이 확정된다.

당선이 확정되면 교정위원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조(공포) 본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종법사 선거법 62. 3. 5 개정 (교규 제41호)

제1조(목적) 본법은 교헌의 정한바에 따라 종법사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명하게 행함을 목적한다.

제2조(선거사무) 종법사 선거사무는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제3조(종법사 선거인단) 1. 종법사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으로 함)은 교헌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에 종법사가 소집 공고 하여야 한다.

2. 선거인단의 의장은 선거인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인단 회의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선거) 종법사 선거는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5조(투표 및 개표)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행하며 개표는 본회의에서 선정한 남여 각1인의 단원 입회하에 행한다.

제6조(당선종족수) 1. 종법사 당선은 재적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이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3.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이가 없을때에는 최다 득표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한다.

제7조(당선선언) 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인단 회의에서 당선을 선언한다.

제8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1인이상 기표한 것

제9조(당선공고) 종법사의 당선이 확정되면 의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고 중앙 교의회의 추대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부 칙

제10조(시행) 본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3) 종법사선거 규정 73. 7.15 개정 (교규 제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법사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정하게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1. 종법사의 선거는 수위단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종법사의 선거는 교현 제 31조에 의한 피선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개표) 개표는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남,녀 단원 각 2인과 임시의장이 행 한다.

제4조(당선정족수) 1. 수위단회 재적단원 3분의 2이상 득표자를 종법사 당선자로 한다.

2. 전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투표 한다.

제5조(당선확정) 개표가 끝나면 임시의장은 당선을 선언함으로써 당선이 확정 된다.

제6조(당선자 공고) 당선이 확정되면 임시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 중앙교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사무) 종법사의 선거사무는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제8조(시행) 이 규정은 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수위단회에 관한 불법연구회 규약 및 원불교 교헌상의 규정 조항 모음

(1) 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원기 27년 4월)

제 6 절 수위단회

제103조 수위단회는 본지부 연합회에서 선정한 수위단회으로써 此를 조직함.

제104조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인 중에서 선정함.

단, 창립기한중은 법마상전급인도 피선거자격이 유함.

제105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단, 재임함을 득함.

제106조 수위단은 남여별로 그 단을 조직하고 정원은 단장을 합하여 각 10인으로 함.

종법사는 남여 각 단의 단장이 되어 此를 통솔함.

제107조 수위단 정회는 매년 4월 28일에 此를 소집하고 임시 필요가 유한 시는 임시회를 소집함.

제108조 수위단은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 기관으로 하고 좌의사항을 의결함.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및일일로 인정한 사항.

제109조 기타 수위단회에 관한 세칙은 별로 정함.

(2) 원불교 교현 제정 (원기 33년 4월 26일)

제74조 수위단회는 중앙교의회에서 선정한 수위단원으로 조직한다.

제75조 수위단원은 정사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단, 正師자격이 없을때에는 教正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제76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개년으로 하고 補缺로 피선된때에는 前員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7조 수위단은 남녀별 2단을 두고 정원은 단장을 합하여 각 10인으로 하되 종법사가 2단의 단장이 되여 이를 통솔한다.

제78조 수위단회는 4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제79조 수위단회의 개회及의결의 방법은 중앙교의회에 준한다.

제80조 수위단회는 종법사의 최고자문에 옹하고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추천에 관한 것.
2.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것.
3. 직원선정에 관한 것.
4. 법계승강에 관한 것.
5.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3) 원불교 교헌 1차 개정 (원기 44년 4월 25일)

제27조 수위단회는 수위단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단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28조 수위단은 남녀 각 9인의 단원과 단장 1인으로 조직된다.

수위단의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29조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마상전급 중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

제30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보궐기간은 前 단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수위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수위단 보궐단원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3. 교정원장, 감찰원장,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4. 각부의 장, 교령, 교감, 교무, 법감, 예감, 감찰위원, 각 사무처의 장, 각 시설기관의 장 및 기타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교정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계승강에 관한 사항

8. 교서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제32조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수시소집할 수 있다.

제33조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중앙단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34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可否同數일 時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31조의 1항 · 7항 및 8항은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5조 수위단원을 역임한 자를 원로라 칭하고 원로로써 원로원을 구성하여 종법사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4) 원불교 교헌 2차 개정 (원기 49년 4월 29일)

제29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

제30조(조직) 수위단은 남녀 각 9인의 단원과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수위단의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31조(선거)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때에는 법마상전급 중에서 선거 할 수 있다.

수위단원의 보궐선거는 수위단회의 추천을 얻은 후 1항이 절차에 따라 한다.

제32조(임기) 수위단원은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보궐임기는 前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수위단 보궐단원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3. 교정원장 감찰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4.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교정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계승강에 관한 사항
8. 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회의 소집)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제35조(의장단)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중앙단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36조(정족수)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 한다.

단, 33조 1항, 7항, 8항은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7조(원로) 수위단원을 역임한 분을 원로라 칭한다.

제38조(사무처) 수위단회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수위단회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5) 원불교 교헌 3차 개정 (원기62년 3월 1일)

제40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

제41조(조직) 1. 수위단회는 18인 이내의 원로단원 남녀 각8인의 선거에 의한 단원,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단원 및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2.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42조(선임) 1. 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보궐임기 제외)를 역임한 이가 된다.
2. 선거에 의한 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예비법강항마위 중에서 선거 할 수 있다.

3.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은 원로단원이 이에 당한다.
4. 특임단원은 해외교구의 교감 이상 중에서 종법사가 특임한다.
5. 선거에 의한 단원의 보궐선거는 2항에 의한다.
6. 수위단원 선임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43조(임기) 1. 전조 1항 · 2항의 수위단회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2. 전조 4항의 단원은 해외 재직중에 한하여 재임한다.
3. 전조 2항 단원의 보궐임기는 前단원의 임기로 한다.

제44조(결의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2. 교서편정과 교헌 ·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정원장 · 감찰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4. 감찰위원 선정이 관한 사항
5.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 선정이 관한 사항
8.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의 소집) 1.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2.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회장단) 1.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2. 중앙단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47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44조 1항 · 2항은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8조(법사)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수위단원 및 법 강항마위 이상이 된 이를 법사라 하고 동등히 예우한다.

제49조(사무처) 1. 수위단회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수위단회사무처를 둔

다.

2.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6) 원불교 교헌 4차개정 (원기72년 11월 15일)

제42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다.

제43조(구성)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 및 원로수위단원과 남녀 각9인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원로수위단원) 원로수위단원은 정수위단원 2기 역임자로 한다.

제45조(정수위단원) 1. 정수위단원은 정사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교의회의 중앙위원과 현역 4급이상 교역자가 선거한다.

2.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원로수위단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3. 정수위단원의 보궐선거는 제1항에 의한다.

제46조(임기) 1. 원로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정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보궐단위의 임기는 전 단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이상일 경우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미만 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교서 편정과 교헌 ·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4.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5. 교헌 · 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6. 교정원장 · 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회의소집)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단장이 소집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의장단) 1.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는다.

2. 수위단회의 부의장은 원로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과 정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제50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7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1조(사무처) 1. 수위단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4. 수위단회 규정

(1) 수위단회법 49. 10. 16 제정 (교규 제 9호)

제 1조 (목적) 본법은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하므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제 2조 (소집) 수위단회는 교현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10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조 (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단,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제 4조 (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 5조 (총선후의장) 총선거후 처음 가지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6조 (위임출석) 단원이 유고할 시는 타단원에게 위임출석케 할 수 있다. 위임 받은 단원은 결의에 있어 위임권 까지 행사한다.

제 9조 (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제 10조 (결의권 없이 참석) 수위단회에 각부의 장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전문위원을 결의권 없이 본회의에 참석케 할 수 있다.

제 11조 (보고 증인 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를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조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수위단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조 (전문위원) 수위단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4조 (의안제출) 수위단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단원 2인 이상의 연서를 얻어서 한다.

제 15조 (청원·건의 결의) 수위단회는 단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6조 (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 회의는 본법에 특별히 정한바 외에는 현행 일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수위단회법 54. 9. 4 개정 (교규 제 23호)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하므로 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제 2조 (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조 (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도 있다.

제 4조 (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 5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제 6조 (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7조 (수위단회사무처) 1. 수위단회사무처는 교헌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장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제 8조 (도서실) 1. 수위단회에 수위단회 도서실을 둘 수 있다.

2. 도서실에 소장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제 9조 (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10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1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1)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수위단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교정위원회 원의회 중앙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화위원회

- 1)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2) 교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육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위원회
 - 1)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감찰위원회

- 1) 감찰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교헌 교규의 유권 해석에 속하는 사항
- 3)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제 12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등을 심의조사 한다.

제 1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4인으로 한다.

제 14조 (상임위원장의 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 15조 (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동수 일때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연도말까지로 한다.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단장의 재가를 얻어 증원할 수 있다.

제 17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 조사를 보조하며 전문사항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 18조 (전문위원 연설회의)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설회의를 가질수 있다.

2. 전문위원 연설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3. 부장 처장은 연설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

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 2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특별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본 회의에 공고한다.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1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조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22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 23조 (위원회의 연석회의) 1.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할 수는 없다.

2.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수 있다.

제 25조 (조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 26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27조 (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제 28조 (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 기관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 할 수 있다.

제 29조 (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회 5일 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조 (의안제출의 조정)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 부처의 의안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조 (청원 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32조 (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제 33조 (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소관부처에 이송한다.

제 34조 (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수위단회사무처에 보존한다.

제 35조 (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바 외에는 현행 일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 36조 (공포) 이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3) 수위단회법 62. 12. 10 개정 (교규 제 49호)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하므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제 2조 (소집) 1. 수위단회는 교현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조 (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도 있다.

제 4조 (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 5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제 6조 (교법판정) 교현 교규 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의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판정한다.

제 7조 (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8조 (수위단회사무처) 1. 수위단회사무처는 교현 제 49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장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안건과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제 9조 (자료실) 1. 수위단회에 수위단회 자료실을 들 수 있다.

2. 자료실에 소장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제 10조 (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11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법제 위원회

- 1) 수위단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화 문화 위원회

- 1)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2)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정 산업 위원회

- 1)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 훈련 위원회

- 1)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익 봉공 위원회

- 1)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4대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감찰 기강 위원회

- 1)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제 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등을 심의조사 한다.

제 14조 (상임위원장의 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 15조 (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동수 일때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 17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 조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 18조 (전문위원 연석회의)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전문위원 연석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3. 부장 처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과 현지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 2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1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22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 23조 (위원회의 연석회의) 1.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할 수는 없다.

2.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제 24조 (공청회)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2.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 제 2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 26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 27조 (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 제 28조 (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 기관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 29조 (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회 5일 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0조 (의안제출의 조정)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 부처의 의안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조 (청원 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 32조 (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한다.
2. 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 제 33조 (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 제 34조 (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수위단회사무처에 보존한다.
- 제 35조 (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 36조 (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실시한다.

(4) 수위단회법 71. 10. 1 개정 (교규 제 77호)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하므로 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제 2조 (소집) 1. 수위단회는 교헌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조 (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도 있다.

제 4조 (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 5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제 6조 (교법판정) 교헌 교규 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의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판정한다.

제 7조 (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8조 (수위단회사무처) 1. 수위단회사무처는 교헌 제 49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장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안건과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제 9조 (자료실) 1. 수위단회에 수위단회 자료실을 둘 수 있다.

2. 자료실에 소장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제 10조 (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11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법제 위원회

1) 수위단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화 문화 위원회

- 1)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2)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정 산업 위원회

- 1)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 훈련 위원회

- 1)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익 봉공 위원회

- 1)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4대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감찰 기강 위원회

- 1)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제 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등을 심의조사 한다.

제 14조 (상임위원장의 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 15조 (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동수 일때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 2.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 17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조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 18조 (전문위원 연석회의)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수 있다.

2. 전문위원 연석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3. 부장 처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과 현지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 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 2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1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22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 23조 (위원회의 연석회의) 1.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할 수는 없다.

2.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공청회)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2. 공청회를 열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제 2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 26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27조 (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

의를 할 수 있다.

- 제 28조 (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 기관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 29조 (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회 5일 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0조 (의안제출의 조정)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 부처의 의안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조 (청원 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 32조 (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한다.
2. 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 제 33조 (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 제 34조 (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수위단회사무처에 보존한다.
- 제 35조 (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 36조 (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5) 수위단회법 74. 4. 15 개정 (교규 제 83호)

-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하므로 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 2조 (소집) 1. 수위단회는 교헌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조 (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도 있다.
- 제 4조 (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 5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 제 6조 (교법판정) 교헌 교규 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의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판정한다.
- 제 7조 (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 자가 의장이 된다.
- 제 8조 (수위단회사무처) 1. 수위단회사무처는 교헌 제 51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장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안건과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 제 9조 (자료실) 1. 수위단회에 수위단회 자료실을 둘 수 있다.
2. 자료실에 소장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 제 10조 (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 11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 12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법제 위원회
 - 1) 수위단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화 문화 위원회
 - 1)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2)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정 산업 위원회
 - 1)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 훈련 위원회
 - 1)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익 봉공 위원회

1)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4대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감찰 기강 위원회

1)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제 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등을 심의조사 한다.

제 14조 (상임위원장의 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 15조 (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동수 일때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 17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 조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 18조 (전문위원 연석회의)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전문위원 연석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3. 부장 처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과 현지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 제 2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 21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제 22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 23조 (위원회의 연석회의) 1.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할 수는 없다.
2.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제 24조 (공청회)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2. 공청회를 열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 제 2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 26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 27조 (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 제 28조 (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 기관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 29조 (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때에는 개회 2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 30조 (의안제출의 조정)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 부처의 의안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조 (청원 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32조 (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한다.

2. 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제 33조 (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제 34조 (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하여 수위단회사무처에 보존한다.

제 35조 (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실시한다.(74. 4. 15)

(6) 수위단회 규정 76. 12. 15 개정 (교규 제 92호)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하므로 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제 2조 (소집) 1. 수위단회는 교헌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 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조 (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도 있다.

제 4조 (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 사정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 5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제 6조 (교법판정) 교헌 교규 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의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판정한다.

제 7조 (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8조 (수위단회사무처) 1. 수위단회사무처는 교헌 제 51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장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안건과 기

회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제 9조 (자료실) 1. 수위단회에 수위단회 자료실을 둘 수 있다.

2. 자료실에 소장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제 10조 (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11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법제 위원회

- 1) 수위단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화 문화 위원회

- 1)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2)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정 산업 위원회

- 1)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 훈련 위원회

- 1)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익 봉공 위원회

- 1)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4대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감찰 기강 위원회

- 1)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 제 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등을 심의조사 한다.
- 제 14조 (상임위원장의 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제 15조 (상임위원회의 결의) 1.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동수 일때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2. 각 상임위원회는 당해 위원중에서 간사위원 1인씩을 선임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케 한다.
- 제 16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 제 17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 조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 제 18조 (전문위원 연설회의)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설회의를 가질수 있다.
2. 전문위원 연설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3. 부장 처장은 연설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 19조 (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과 현지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 제 2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 21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22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 23조 (위원회의 연석회의) 1.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할 수는 없다.

2.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공청회)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2. 공청회를 열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제 2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 26조 (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27조 (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제 28조 (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 기관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 할 수 있다.

제 29조 (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때에는 개회 2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30조 (의안제출의 조정)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 부처의 의안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조 (청원 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32조 (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한다.

2. 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제 33조 (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의

장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제 34조 (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 수위단회사무처에 보존한다.

제 35조 (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바 외에는 현행 일반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실시한다.(74. 4. 15)

(7) 수위단회 규정 78. 5. 13 전면개정 (교규 제 99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 (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 4장 제 2절에 근거한 수위단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총선거후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고 법립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제 2 장 단 원

제 3조 (등록) 수위단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원의 당선이 확정 공고 되면 수위단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접수 등록하여야 한다.

제 4조 (단장) 교헌 제32조에 근거한 종법사 선거규정에 의하여 당선된 종법사는 단장으로서 하늘의 기운을 응하는 의미를 갖으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제 5조 (중앙) 새로 당선된 단장의 주재 아래 원로수위단 남녀 각1인과 정수위단 남녀 각1인의 중앙단원을 선출하여 단장을 보좌하게 하며 땅의 기운을 응하는 의미를 갖고 본 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 6조 (방위) 단장과 중앙을 제외한 단원은 추첨과 의장단의 조정에 의하여 건·감·간·진·손·이·곤·태의 팔방 방위에 지정되며 각 방위는 팔방의 기운을 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 7조 (단원 의무와 권리) 1. 단원은 교단의 얼로서 단장의 지도를 받아 방위별 산하 항단 단원들을 지도 교화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힘 미치는 대로 그 이하 단원까지도 지도 교화해야 한다.

2. 단원은 수위단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주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 3 장 회 의

제 8조 (정기·임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교헌 제48조에 따라 매년 11월중 총회 전후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과 교정원장,감찰원장 또는 수위단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 개최한다.

제 9조 (소집) 회의는 교헌 제48조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되 개회일 2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간부참석) 본 회의의 개최시 교정원, 감찰원 양원 간부는 본 회의에 참석하여 경과보고를 하고 의안 심의의 관련 간부는 해당 정책 질의 답변을 한다.

제 11조 (의안) 의안의 상정은 교정원, 감찰원 양원장과 수위단원이 하되 개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2조 (의장단 협의회) 의안 조정과 교단의 주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단 협의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교단 간부 등을 참석 시킬 수 있다.

제 13조 (청원·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처원이나 건의를 접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 14조 (예심) 1. 의장은 접수된 의안, 청원, 건의를 사전에 수위단원에게 배부하고 검토하게 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2. 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연설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 15조 (의결) 1. 회의는 교헌 제 50조에 의거하여 개회와 의결을 한다.

2. 표결은 종법사 선거, 중앙단원 선출, 법강항마위 이상 법위사정, 인사에 한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한다.

3. 종법사는 의결된 의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재심의 절차는 2차에 한하며 2차 심의를 거쳐서도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안은 기각 처리한다.

4. 의결된 의안은 종법사의 결재로서 확정하고 확정된 의안은 7일이

내에 양원에 송부한다.

제 4 장 위 원 회

제 16조 (상임위원회) 수위단회에 3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며 그 내용과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화위원회

- 가.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나. 수위단회사무처에 속하는 사항
- 다.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교화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국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총무위원회

-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중앙교의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감찰원 사무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 바.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사업위원회

- 가.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각 사업회에 속하는 사항
- 다.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 17조 (구성)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회의에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단은 상임위원이 되지 않으나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8조 (위원장·간사)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감사위원 1인을 선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

2. 위원장은 원로단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정수위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정원, 감찰원 간부는 위원장이나 간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19조 (상임위원회의) 1. 상임위원회의에서는 소관업무와 수위단회의에 상정

할 의안중 필요사항을 예비 심의한다.

2. 상임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부처실장에게 정책 질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결의 사항 시행여부를 보고 받고 점검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중앙단원이 의장을 맡는다.

제 20조 (상임) 중앙단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

제 21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두되 위원회별로 7인 내외로 한다.

2. 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3. 위원회별로 대표를 선출하여 회의를 통괄하게 한다.

4. 2개 이상의 위원회 전문위원의 연석회의에서는 수위단회 사무처장이 의장이 된다.

5. 교정원,감찰원의 부처장실은 전문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2조 (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인사,예·결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당해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의사 진행을 담당하게 한다.

3. 특별위원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별도 기구를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과제가 끝나면 수위단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4.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과제에 대한 의안을 본 회의에 제안 할 수 있다.

제 23조 (교서 감수위원회) 1. 수위단회에 교서를 감수하기 위하여 교서 감수 위원회를 둔다.

2. 교서 감수위원회는 단원 중에서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위촉한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교서 감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교서 감수위원회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5 장 교 화 단

- 제 24조 (교화단) 수위단회는 교헌 제42조에서 명시한 최상위 교화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교화단 규정에 따라 교화단을 지도 관리 한다.
- 제 25조 (명칭) 수위단을 각단(角團)이라 하고 그 이하 단은 28수에 따라 호칭 한다.
- 제 26조 (지침) 1. 수위단(角團) 단장은 단 지침을 수립하여 교화단의 지도와 교화를 총괄한다.
2. 중요 지침의 수립을 위해 각단(角團) 회의에서 협의 할 수 있다.
- 제 27조 (방위 공동단장) 수위단원은 해당 방위의 공동 단장이 되며 상하 단원에 대한 지도의 책임을 맡는다.
- 제 28조 (시행규칙) 단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 무

- 제 29조 (수위단회사무처) 1. 교헌 제51조에 의거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두어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
2. 수위단회 사무처에 약간인의 상임연구원을 두어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정책 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하도록 한다.
- 제 30조 (결의록) 사무처에서는 결의록 3통을 작성하여 종법사의 재가를 받아 교정원과 감찰원에 각각 1통씩 부송한다.
- 제 31조 (시행보고) 교정원, 감찰원에서는 모든 결의된 의안의 시행 사항을 본회 정기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32조 (예·결산) 1. 수위단회 예산은 사무처에서 수립하고 교단의 소관 사무 담당처에 제출하여 책정 집행하다.
2. 연구 기금은 특지가의 후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78.6.30)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5. 수위단원 선거규정

수

(1) 수위단회 선거법 49. 10. 16 제정 (교규 제9호)

제1조(목적) 본 法은 교헌의 정한바에 따라 수위단원의 선거 또는 인준을 질서 있고 공명하게 행함을 목적한다.

제2조(선거사무) 수위단원 선거사무는 교정원총무부에서 행한다.

제3조(선거공고) 수위단원 선거는 늦어도 선거일 10일전에 공고한다.

제4조(후보 및 선거) 수위단원의 총선거는 현직 수위단원 전원과 수위단회에서 추천한 남녀 각 5인을 후보로 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현직단원 외의 후보자는 교헌의 정한바 외에 교직15년 이상 연령 60세 이하 35세 이상이라야 한다.

단, 종법사의 특별한 추천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5조(보궐선거) 보궐단원의 선거는 수위단회에서 추천한 5명이내의 후보자중에서 선거한다.

제6조(투표용지교부) 교정위원회 의장은 정규의 투표용지에 검인을 찍어 교부한다.

제7조(투표) 투표는 각자의 의석에서 기표하여 행한다.

제8조(개표) 개표는 본회의에서 선거한 남녀 각 2인의 위원과 의장이 행한다.

제9조(투표결과발표) 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결과를 발표한다.

제10조(무효투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관계 외에 기표한 것
3. 남녀 각각 당선수에 초과하게 기표한 것
4. 기표 외에 문자 또는 물형을 그린 것

제11조(인준 확정) 수위단원은 교헌의 정한바에 따라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음으로서 당선이 확정된다. 당선이 확정되면 중앙교의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조(공포) 본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수위단원 선거법 62. 3. 5 개정 (교규 제42호)

제1조(목적) 본법은 교현 제 42조에 의하여 수위단원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명하게 행함을 목적한다.

제2조(선거사무) 수위단원 선거사무는 교정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3조(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 1)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교현 제42조 3항에 의하여 구성하고 소집은 늦어도 수위단원 선거 10일전에 수위단회 의장이 행한다.

2)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수위단회 의장이 이에 당한다.

3)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frac{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후보자격) 후보자는 교현 제 42조 2항에 의하여 교직 20년이상, 연령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종법사의 특별추천이 있는 이는 예외로 한다.

제5조(후보추천및 선거) 수위단원의 총선거는 추천위원회에서 남여 각 정원의 배수이상을 후보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단. 재가 수위단원의 정원은 수위단회에서 정한다.

제6조(보궐선거) 보궐단원의 선거는 차기 교정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후보자 공고) 추천위원회 의장은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순위) 후보자 순위는 교직년수를 우선하고 교직년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9조(투표용지 교부) 교정위원회 의장은 남여 각각 정규의 투표용지에 겸인을 찍어 교부한다.

단, 재가 후보자의 명단은 별항으로 한다.

제10조(투표및 개표)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행하며 개표는 본회의에서 선정한 남여 각4인의 위원 입회하에 행한다.

제11조(무효투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것.

2)기표난외에 기표한 것.

3)남여 각각 당선수에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기표한 것.

제12조(동표자 처리) 후보추천및 선거 결과가 동표일때는 교직년수를 우선하고 교직년수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13조(선거결과 선언) 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 결과를 선언함으로써 당선

이 확정된다.

제14조(특임단원의 자격) 특임단원의 선임자격은 본법의 제4조에 의한다.

제15조(수위단원 확정공고) 수위단원 선거결과 발표가 끝나면 종법사는 원로 단원 및 특임단원을 포함한 전 수위단원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조(시행)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수위단원 선거법 67. 9. 2 개정 (교구 제59호)

제1조(목적) 본법은 교헌 제 42조에 의하여 수위단원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명하게 행함을 목적한다.

제2조(선거사무) 수위단원 선거사무는 교정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는 교정위원선거 직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 1)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교헌 제42조 3항에 의하여 구성하고 회의개최는 수위단원 선거 10일 이전에 하며 소집공고는 늦어도 추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추천위원회 위원장 이행한다.

2)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위단회 의장이 이에 당한다.

3)추천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후보자격 및 후보자격자순위) ①후보자는 교헌 제 42조 2항에 의하되 교직 20년이상 년령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종법사의 특별추천이 있는 이는 예외로 한다.

②후보자격자의 순위는 법위를 우선하고, 법위가 같을 때는 교직년수를 우선하고 교직년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단, 재가 후보자의 순위는 별항으로 한다.

제6조(후보추천 및 선거) 수위단원의 총선거는 추천위원회에서 남여 각 정원의 배수이상을 후보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단. 재가 수위단원의 정원은 수위단회에서 정한다.

제7조(보궐선거) 보궐단원의 선거는 보궐사유가 생긴 후 처음 개최되는 교정 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수위단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기할 수 있다.

제8조(후보자 공고) ①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늦어도 선거 10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②추천된 후보자의 사진, 법호, 법명 및 교단경력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직접비밀 투표로써 한다.

제10조(투표용지) ①투표 용지에는 남녀 별로 순위 및 법명을 표시하여 인쇄한다.

②후보자의 순위는 본법 제5조 2항의 후보자격자 순위에 준하여 정한다.

제11조(투표통지서 교부) 총무부장은 투표통지서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7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 및 개표위원) ①투표 및 개표는 교정위원회에서 선정한 9인의 투표 및 개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투표용지수령) ①선거인은 위원에게 투표통지서를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의 절취선에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번호난에 선거인 등재 번호를 기입한 후 절취선을 따라 절취하여 교부한다.

제14조(기표)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당선 정수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기표난에 ○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표개시) 투표시간이 끝나면 위원은 바로 개표한다.

제16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난 외에 기표한 것.

3. 남·녀 각각 당선 수에 초과되거나 미달하게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내란이 막혀있는 것.

2. 동일한 후보자에만 두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중첩된 부분이 기표 원둘레의 4분의 1이내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제17조(당선인의 결정) 위원장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서대로 정수의 수 위단원을 결정하고 이를 바로 교정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동표자처리) 후보추천 및 선거 결과가 동표일 때는 교직 년수를 우선하고 교직 년수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19조(선거결과선언) 교정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의 통보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순위별로 당선인을 선포함으로써 당선이 확정된다.

제20조(특임단원의 자격) 특임단원의 선임 자격은 본법의 제5조 제1항에 의한다.

제21조(공고) 수위단원 선거 결과 발표가 끝나면 종법사는 원로단원을 포함한 전수위단원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조(시행)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수위단원 선거 규정 73. 9. 15 개정 (교구 제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위단원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정하게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정수위단원 후보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결의는 제적위원 $\frac{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정원등 각 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일 14일전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① 교헌 제45조 1항, 2항에 의하여 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회의개최는 정수위단원 선거 10일 이전에 하며 소집공고는 늦어도 7일전까지 위원장이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후보추천 및 선거) 수위단원 선거는 추천위원회에서 남,녀 각 정원의 3 배수를 추천으로 선거한다. 다만 재가 수위단원의 정수는 수위단회에서 정한다.

제6조(후보자격) 수위단원의 후보자격은 교헌 제45조 1항에 의한다.

제7조(후보자격자 명부순서) ① 후보자격자 명부순서는 법위, 교직년수, 연령의 순으로 한다.

② 재가 후보자격자의 명부순서는 별항으로 한다.

제8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교헌 제45조, 제46조에 의거한다.

제9조(후보자 공고)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사진등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송부 할 수 있다.

제10조(선거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제1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출가남, 출가여, 재가별로 순서 및 법명을 표시하여 인쇄한다.

② 후보자의 순서는 본 규정 제7조 후보자격자 명부순서에 준하여 정한다.

제12조(투표통지서 교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통지서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3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투표용지의 수령) ① 선거인은 위원에게 투표통지서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의 절취선에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번호난에 선거인 등재번호를 기입한 후 절취선을 따라 절취하여 교부한다.

제14조(기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당선정수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5조(개표) 투표시간이 끝나면 위원은 바로 개표한다.

제1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난 외에 기표한 것.

3. 남,녀 각각 당선수에 초과되거나 미달하게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0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0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내공이 막혀 있는 것.
2.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중첩된 부분이 기표 원둘레의 4분의 1이내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각 명확한 것.
3. 동일한 후보자에게 중첩 기표한 것.

제17조(동표자 처리) 후보추천 및 선거결과가 동표일때에는 교직년수, 연령순으로 한다.

제18조(당선인의 결정) 위원장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서대로 정수의 수위단원을 결정하고 투표용지의 순위별로 당선자를 발표함으로서 당선이 확정된다.

제19조(수위단원 명단확정 공고) 수위단원의 선거결과 발표가 끝나면 종법사는 원로단원을 포함한 전 수위단원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6. 수위단회사무처 규정

(1) 수위단회사무처 규정 54. 9. 15 제정 (교규 제24호)

제 1조(목적) 이 법은 수위단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아래 서기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과장 : 2인 주임 : 약간인 주사 : 약간인 서기 : 약간인

제 3조(직무) 1. 사무처장은 의장단의 감독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관임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서기 과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서무, 기획, 관리, 운영, 의사, 편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3. 주임 및 주사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受任 사무에 전임한다.

제4조(연구비지급) 상주임원과 전문임원에게 필요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사무분담) 이 규정에 규정된 사무분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수위단회사무처 규정 65. 6. 17 개정 (교규 제5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위단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및 차장 아래 서기과와 자료조사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인
2. 주임 약간인
3. 주사 약간인
4. 서기 약간인
5. 연구원 약간인

제3조(직무) 1. 사무처장, 차장은 의장단의 감독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임원을 지휘감독한다.

2. 서기과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의사, 기획, 관리, 운영,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자료조사과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자료연구, 분석,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주임 및 주사 ·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를 전임한다.

제4조(위원) 본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비 지급)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연구업무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7조(공포)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